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39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이광희 · 임미애 · 채현일
조계원 · 양부남 · 민병덕
이재강 · 박정현 · 허영
김문수 · 황명선 · 최혁진
김우영 · 박지원 · 박성준
양문석 · 이언주 · 이강일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함. 정보공개심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더라도 위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더라도 회의의 일시·장소를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규정도 없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 여부 등을 더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는 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심의회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위원명단, 회의의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의 절차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의회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심의회 위원의 명단, 회의의 일시와 장소, 위원 기피 신청의 절차 등을 회의일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심의회는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서면 진술을 포함한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심의회에의 사전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심의회의 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에 청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심의회는 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심의회 위원의 명단, 회의의 일시와 장 소, 위원 기피 신청의 절차 등 을 회의일 3일 전까지 통지하 여야 한다.</u>
<u><신 설></u>	<u>⑦ 심의회는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사자에 게 의견을 진술(서면 진술을 포함한다)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u>
<u>⑥</u> (생 략)	<u>⑧</u> (현행 제6항과 같음)